

보안교육기관 지정 신청서		처리기간	
		30일	
신청인	① 명 칭(상호)		
	② 대표자의 성명		
	③ 주 소		
<p>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☎ () -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해 양 수 산 부 장 관 귀 하</p>			
구비서류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해양수산부장관 확인사항	수수료
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보안교육기관의 시설 등의 소유에 관한 증빙서류(전세 또는 임대인 경우 계약서 사본) 2. 영 제14조의 보안교육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. 보안교육 시행계획서 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음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